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www.namwon.go.kr

기관의 장 선 람

제35호

제35호 2018. 8. 10(금)

조례

○남원시 조례 제1428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- 1 ○남원시 조례 제1429호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------ 4

고시

○남원시 고시 제2018- 97호 남원 노암 제2농공단지 계획(변경)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------ 7 ○남원시 고시 제2018- 9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----- 16

회 람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18년 08월 10일

남원시 조례 제 1428 호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1시간 이내 면제(단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주차료) ① ~ ③ (생 략)	제12조(주차료) ① ~ ③ (현행과
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	같음)
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	4
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
<u><신 설></u>	1.•2. (현행과 같음)
	3.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
	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
	<u>1</u> 시간 이내 면제(단, 이를 확
	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
	<u>여야 함)</u>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- 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- 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**5천만원 미만**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18년 08월 10일

남원시 조례 제 1429 호

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착한가격업소"란 외식업, 이 · 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· 품질 ·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 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- 2. "소상공인"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

제35호

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4조(지정 및 취소)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(이하 "관리 지침"이라 한다)을 따른다.
- 제5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
 -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이용활성화 등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착한가격업소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7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(표찰) 교부
 - 2.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
 - 3.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・하수도 요금 보조
 - 4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

5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
시

- 6.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
- 7.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영업자의 협조)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(연합회 구성 등)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 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포상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남원시 고시 제2018-97호

남원 노암 제2농공단지 계획(변경)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
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남원 제2농공 단지 계획(변경)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> 2018년 8월 10일 남 원 시 장

1. 농공단지 명칭, 위치, 면적(변경)

ㅇ 명칭 : 남원 노암 제2농공단지

○ 위치 : 전북 남원시 노암동 852-2번지 일원

○ 면적 : 179,907m² → 179,996m²(증 89m²)-지적분할에 의한 오차정정

2. 농공단지 계획(변경) 목적

○ 농공단지 면적변경(지적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) 및 공장배치계획 변 경 등으로 인한 산업시설용지 효율성 제고

3.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금회 사업부문)

○ 사업시행자 성명 : ㈜지엠에프 대표이사 김호수

○ 사업시행자 주소 :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51-3번지

4. 농공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(금회 사업부문)

○ 개발기간 : 2017년 ~ 2018년 12월(당초)

2017년 ~ 2018년 08월(변경)

ㅇ 개발방법 : 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세확장에 따른 직접개발

5. 주요 유치업종(변경없음):

○ 음·식료품제조업(15), 조립금속제품제조업(28), 전자부품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32) 제35호

구 분		면적(m²)		구성비	비고
ੀ ਦ	당초	변경	변경후	(%)	HI 17
합 계	179,907	증)89	179,996	100.0	
산업시설용지	123,136	증)3,358	126,494	70.3	
공동이용시설용지	1,098	_	1,098	0.6	
공공시설용지	55,673	감)3,269	52,404	29.1	
주차장	1,198	_	1,198	0.7	
저류시설	2,049	_	2,049	1.1	
폐수종말처리장	1,521	_	1,521	0.9	
도 로	13,392	_	13,392	7.4	
사면및녹지	37,513	감)3,269	34,244	19.0	
배수지(구역외)	770		770		농공단지외 기반시설

보

7. 주요 기반시설계획(변경)

1) 도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	규	모				연 장			사용	주요 경	최초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점	종점	형태	과지	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3	20	12	집산 도로	1,058	노암동 855	노암동 859	일반 도로	_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
기정	소로	3	197	4	특수 도로	30	노암동 859	노암동 859	보행자 전용	_	2008.10.30. 남 원 시 고 시 제2008-60	
기정	소로	3	198	4	국지 도로	73	노암동 863	노암동 863	일반 도로	_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

2) 주차장 결정조서(변경없음)

¬ н	도면	시선명	시설의 종	ما تا	면 적 (n	n²)		최 초	n) —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류	위 치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기정	25	주차장	노외주차장	노암동 862번지	1,198	_	1,198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_

3) 완충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그님	도면	기사다	시설의 세	위 치	면 적 (m²)		최 초	ען יי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분	위 시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변경	17	녹지	완충녹지	노암동 861번지 일원	37,513	감)3,269	34,244	2008.10.30 남원시고시 제2008-60	_

보

ㅇ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7	완충 녹지	∘면적변경 : 37,513 m²→34,244 m²	•공장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효 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

4) 유수지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기정	(m²) 변경	변경후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유수지	저류시설	노암동 856번 지	2,049	_	2,049	2008.10.30 남원시고시 제 2008-60	

5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프시	시설명	시설의	위 치	면적	(m²)		최 초	비고
1 4	표시 번호	/기 근 6	종류	71 /1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P1-12-
기정	1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장	노암동 856번 지 일원	1,521	_	1,521	2008.10.30 남원시고시 제 2008-60	

8.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- Э Н	도면	그 여 며	٥١	-1	면 적(m²))		.ul
구분	표시 번호	구 역 명	위	치	기정	변경	변경후	비고
변경	8	남원 노암지구 지 구단위계획구역	남원시 852-2년 원	노암동 먼지 일	179,907	증)89	179,996	

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위치	면적(m²)	결 정 사 유
8	남원시 노암동 산64번지 일원	179,907 → 179,996	·노암 제2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성과 결과 반영

2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(1) 도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규 등급	모 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연 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 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3	20	12	집산 도로	1,058	노암동 855	노암동 859	일반 도로	_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
기정	소로	3	197	4	특수 도로	30	노암동 859	노암동 859	보행자 전용	_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
기정	소로	3	198	4	국지 도로	73	노암동 863	노암동 863	일반 도로	_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

(2) 주차장 결정조서(변경없음)

7 H	도면	1111-d	시설의 종	ما -ا	면 적 (n	ŋ²)		최 초	.ul —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류	위 치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기정	25	주차장	노외주차장	노암동 862번지	1,198	_		2008.10.30. 남원시고시 제2008-60	_

フロ	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		위 치	면 적 (m²)	최 초	비고		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분	刊 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미끄
변경	17	녹지	완충녹지	노암동 861번지 일원	37,513	감)3,269	34,244	2008.10.30 남원시고시 제2008-60	_

보

• 결정(변경) 사유서

제35호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7	완충 녹지	◦면적변경: 37,513 m²→34,244 m²	•공장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효 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

(4) 유수지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기정	(m²) 변경	변경후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유수지	저류시설	노암동 856번 지	2,049	_	2,049	2008.10.30 남원시고시 제 2008-60	

(5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종류	위 치	면 적 기 정	(m²) 변 경	변경후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수질오염 방지시설	페수종말 처리장	노암동 856번 지 일원	1,521	_	1,521	2008.10.30 남원시고시 제 2008-60	_

나.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J 7	가구	면적			획	지										
가구 번호	7] 74	변경	획지	번호	위 치	면적	(m²)	비고								
2.4	기정	번경	기정	변경	위치	기정	변경									
총계	166,51 5	166,60 4				166,515	166,604									
			1-1	1-1	노암동 856번지	2,049	2,049	저류시설								
									1-2	1-2	노암동 856번지	1,521	1,521	하수처리장		
1	68 189	68,271	1-3	1-3	노암동 851-1번지	5,404	5,404	산업시설용지								
	00,102	00,271	1-4	1-4	노암동 851-2번지	11,776	11,776	산업시설용지								
											1-5	1-5	노암동 851-3번지	21,414	24,772	산업시설용지
									1-6	1-6	노암동 861번지	26,018	22,749	완충녹지		
2	46,648	46,648	2-1	2-1	노암동 852-1번지	46,648	46,648	산업시설용지								
			3-1	3-1	노암동 853-1번지	1,098	1,098	공동이용시설								
3	10,445	5 10,445	3-2	3-2	노암동 853-2번지	4,945	4,945	산업시설용지								
			3-3	3-3	노암동 853-3번지	4,402	4,402	산업시설용지								
			4-1	4-1	노암동 854-1번지	4,768	4,768	산업시설용지								
			4-2	4-2	노암동 854-2번지	5,314	5,314	산업시설용지								
4	41 240	41,240	4-3	4-3	노암동 854-3번지	7,667	7,667	산업시설용지								
	12,210	41,240	4-4	4-4	노암동 854-4번지	10,798	10,798	산업시설용지								
			4-5	4-5	노암동 864번지	11,495	11,495	완충녹지								
			4-6	4-6	노암동 862번지	1,198	1,198	주차장								

*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가능(3,000㎡ 이상)

다.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획 지 번 호	구 분	계 획 내 용				
_	①가구 1-3, 1-4, 1-5 ②가구 2-1 ③가구 3-2, 3-3 ④가구 4-1, 4-2, 4-3,	용도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허용 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용도 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
	4-4	건폐율	70% 이하				
	(산업시설용지)	용적률	150% 이하				
		높 이					
	①가구 1-1(유수지) 1-2(수질오염방지시	용도	 ・도시・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허용 설치 기준에 따름 용도 ・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 차장 및 그 부대시설(4-6) 				
_	설) 1-6(완충녹지)		불허 용도 이외의 용도				
	④가구 4-5(완충녹지)	건폐율	70% 이하				
	4-6(주차장)	용적률	150% 이하				
		높 이	_				
_	③가구 3-1	용도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 설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 설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불허				
	(공동이용시설)	2 2 4	용도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
			70% 이하				
			150% 이하				
		높 이	-				

라. 기타사항(토지이용)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그 님	위치		면적(m²)			구성비	ul ¬	
구분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(%)	비고
합 계				179,90 7	증)89	179,99 6	100.0	
		1-3	1-3	5,404	_	5,404	3.0	
		1-4	1-4	11,776	_	11,776	6.5	
		1-5	1-5	21,414	증)3,358	24,772	13.8	면적확장
		2-1	2-1	46,648	_	46,648	25.9	
	산업시설	3-2	3-2	4,945	_	4,945	2.7	
산업시설 용지	용지	3-3	3-3	4,402	_	4,402	2.4	
		4-1	4-1	4,768	_	4,768	2.7	
		4-2	4-2	5,314	_	5,314	3.0	
		4-3	4-3	7,667	_	7,667	4.3	
		4-4	4-4	10,798	_	10,798	6.0	
	소 계			123,13 6	증)3,358	126,49 4	70.3	
	도 로	_	_	13,392	_	13,392	7.4	
교통시설	주차장	4-6	4-6	1,198	_	1,198	0.7	
	소 계			14,590	_	14,590	8.1	
유수지	저류시설	1-1	1-1	2,049	_	2,049	1.1	
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장	1-2	1-2	1,521	_	1,521	0.9	
공동이용시설	공동이용시설	3-1	3-1	1,098	_	1,098	0.6	
	완충녹지	1-6	1-6	26,018	감)3,269	22,749	12.6	면적감소
완충녹지	207/1	4-5	4-5	11,495	_	11,495	6.4	
	소 계			37,513	감)3,269	34,244	19.0	

9 농공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게재 생략

시

○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10. 관련도서 열람방법

-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경제과(☎ 063-620-6357)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(관계도서 게재생략)
- 11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:
 - 농공단지 확장 편입지역 토지조서(변경)

소기	내지	지	번	-) 11	지적면적		편입면적(㎡)	
시	동	당초	변경	지목	(m²)	당초	변경	변경후
총	계	4필지	15필지			11,771	중)89	11,860
남원	노암	768	768	창	289	456	감)167	289
남원	노암	-	768-2	창	68	-	증)68	68
남원	노암	-	768-4	창	99	-	증)99	99
남원	노암	768-1	768-1	전	196	714	감)518	196
남원	노암	-	768-3	전	450	-	증)450	450
남원	노암	-	768-5	전	68	-	증)68	68
남원	노암	산64	산64	임	3,479	8,591	감)8,591	-
남원	노암	-	산64-2	임	685	-	증)685	685
남원	노암	-	산64-3	임	5,960	-	증)5,960	5,960
남원	노암	_	산64-4	임	763	-	증)763	763
남원	노암	-	산64-8	임	1,000	-	증)1,000	1,000
남원	노암	-	산64-9	임	80	-	증)80	80
남원	노암	-	산64-10	임	61	-	증)61	61
남원	노암	산65	산65	임	4,254	2,010	감)2,010	-
남원	노암	-	산65-1	임	454	-	증)454	454
남원	노암	-	산65-2	임	820	-	증)820	820
남원	노암	_	산65-3	임	867	_	증)867	867

※ 지적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

남원시 고시 제2018 - 98호

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남 원 시 장 2018년 8월 10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		규	모			연장			사용	주요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		형태	구표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	3	160	6	국지 도로	209	대로3-10 조산동 197-1대	중로3-9 조산동 275-4도	일반 도로	강변도로 삼거리 서측	남원시 고시 제1994-28호	
변경	소로	3	160	6	국지 도로	209	대로3-10 조산동 197-1대	중로3-9 조산동 275-4도	일반 도로	강변도로 삼거리 서측	('94.12.27.)	선형 변경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3-160	소로 3-160	· 폭원 : 6m · 연장 : 209m · 도로 선형 변경	• 현황도로 선형 및 설계 결과를 반영한 선형변경

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·고시도면 : 실음생략